

## 【붙임1】 채용우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

### ○ 채용우대 지원자격

구 분	지 원 자 격
장애인 (가점)	◇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』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채용예정직무의 수행이 가능한 자
취업지원 대상자 (가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</li> <li>◇ 『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</li> <li>◇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2조</li> <li>◇ 『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</li> <li>◇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</li> <li>◇ 『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9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10px;">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</div>

### ○ 우대사항

구 분	우대사항 (가산점 비율 등)	확인방법	비 고
장애인	필기시험 만점의 5%	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	
취업지원 대상자	<u>본인이 취득한 점수로 각 전형을 통과한 후, 합격점수 및 순위 결정 시 만점의 5%~10% 가산점을 더한 점수로 결정</u>	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	-모든 자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. -매 전형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부여